

[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]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출일 : 2003. 12. 1.

○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.

다. 의안번호 : 제 2003 - 62 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○ 2004년도 공기업 전환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리를 도입하고,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코자

○ 그동안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,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개선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제명을 “거창군수도급수조례”에서 “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”로 함 (안 제명)

○ 급수 공사 신청에 있어 세대별, 업종별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(안 제6조 제5항)

-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25% 인상 함 (안 제27조 제1항 별표2)
- 업종 단계를 통·폐합함 (안 제28조 별표3)
 - 현행 : 6종(가정용, 업무용, 영업용, 옥탕1종, 옥탕2종, 전용공업)
 - 변경 : 4종(가정용, 일반용, 대중탕용, 산업용)
- 중수도요금의 감면비율을 변경함 (안 제38조 제4항)
 - 현행 : 가정용 50%, 업무용 40%
 - 변경 : 가정용 70%, 업무용 50%
-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과태료 처분 금액의 30%, 세입증대 및 과징제도 발전등에 이바지한 자에게는 1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(안 제44조)

3. 검토의견

가. 중수도설치 대상 및 확인(제39조) p 44

- 중수도 설치대상이 수도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축연면적이 6만 m^2 이상인 시설로서 1일 1천 m^3 이상 사용하는 시설이 중수도 설치 대상인데 우리 군에 해당시설이 있는지 등 향후 중수도 설치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나. 상수도 사용료 인상(제27조)p 41, p 49

상수도사용료 인상비교표

(단위 : 톤, 원, %)

업종별	현행		개정		인상율		타시군	
	사용량	요금	사용량	요금	금액(원)	비율(%)	창녕	김해
가정용	0~10	356	1~20	494	109	28	630	430
	11~20	414						
	21~30	471	21~30	642	171	36	810	620
	31~40	526						
	41~50	584	31이상	839	255	44	1,060	950
	51이상	641						
업무용	0~20	517	1~30	607	67	11	780	520
	21~50	586	31~50	728	142	24	940	730
	51~100	661	51~100	849	188	28	1,100	830
	101~300	736	101~300	971	235	32	1,250	1,130
	301이상	805	301이상	1,092	287	36	1,410	1,130
영업용	0~30	575	1~30	607	32	6	780	960
	31~50	661	31~50	728	67	10	940	960
	51~100	747	51~100	849	102	14	1,100	1,360
	101이상	833	101~300	971	138	17	1,250	1,650
			301이상	1,092	259	31	1,410	1,650
옥탕2종	0~200	885	1~30	607	△ 278	△ 31	1,010	
	201~500	1,026	31~50	728	△ 157	△ 15	1,220	
	501~1,000	1,168	51~100	849	△ 36	△ 3	1,420	
	1,001이상	1,311	101~300	971	39	3	1,620	
			301이상	1,092	△ 76	△ 6	1,620	
옥탕1종	0~200	506	1~200	638	132	26	1,010	670
	201~300	586	201~300	766	180	31	1,200	1,020
	301~500	667	301~500	893	226	34	1,420	1,020
	501이상	748	501이상	1,020	272	36	1,620	1,050
산업용			1톤당	568				

○ 평균적으로 25% 인상하였다 하나 가정용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1~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이 28% 인상되었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인상폭이 높아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누진제가 적용되었음.

- 종전 옥탕1종은 26%~36%까지 인상된 반면 옥탕 2종은 일반 용으로 분류되면서 6%~31%까지 인하되었으나 우리군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1개업소에 불과함.
- 본 조례안은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수정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체제나 형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참 고

- 2003년도 지방상·하수도 사업 추진지침(행정자치부)
- 상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거창군 소비정책 심의회 심의(2003. 5. 30)